2021년도 제20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1. 8. 4.(수요일),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김경숙, 노정동, 박성호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원

2. 전차(제2021-196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607건(안건번호 제2021-93741호~95442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93741호~93752호(순번 1번~12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을 영리목적으로 이용 중인 점,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93753호~93760호(순번 13번~20번)는 블로그에서 해외 방송물의 영상 및 자막파일을 제공한 사안으로, 최신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및 전송하고 있어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93761호~93768호(순번 21번~28번)는 블로그에서 영상 없이 우리말 자막파일만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자막파일이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전제로 작성된 점, 최신 저작물의 잠재적인 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해당 블로그 내 자막 전송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렵고 심의위원회의 합치된 기준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93769호(순번 29번)는 민원인이 직접 작성한 게시물을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가 무단으로 게시한 사안으로, 현재 심

의대상 게시물이 블라인드 처리되어 저작권 침해 상태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3,509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20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19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4쪽의 저작물명, 5쪽, 6쪽의 저작물명, 방송사명, 7쪽의 안내문 내용, OSP명, 10쪽의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제1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민원인 신고 건으로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C, B,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방송사명, 안내문 내용, OSP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인 12쪽~16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51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3,607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12번은 4명의 민원인이 실명으로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수의 출판 및 만화 불법복제물을 각 제공 중인 사안임. 총 게시물 수는 13건임.
  (순번 2번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동명의 출판저작물의 텍스트 파

일을 50 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으며, 해당 저작물은 네이버 시리즈에서 한 화당 200원에 대여, 400원에 소장 가능함.
(순번 5번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1권~7권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저작물은 네이버 시리즈에서 한 화당 400원에 소장 가능함.
불법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영리를 목적으로 다수의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으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12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3번~20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블로그 이용자가 다수의 일본 방송 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면서, 자막파일(srt 내지 ass)을 함께 게시한 사안임. 총 게시물 수는 44건임.
(순번 13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1화 전체 분량인 약 25분을 스트리밍으로 제공하면서, 동일 회자의 자막파일(srt)을 별도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순번 15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전체 분량인 약 73분을 스트리밍으로 제공하면서 자막파일(srt)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게시판 목록을 보여주면서)모두 '○○○○ ○○○'라는 이름의 게시판에 게시된 상태로, 2019. 1. 9.부터 2021. 8. 4.까지 총 79개의 영상과 자막파일이 함께 게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심의대상 게시물들이 각 제공하고 있는 방송물은 모두 2021년 1, 2분기에 방영된 최신 저작물로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A, B, D 위원: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3번~20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1번~28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블로그 이용자가 다수의 일본 방송과 영화의 자막파일(srt)을 영상 없이 게시한 사안임. 총 게시물 수는 40건임.

심의대상 게시물들이 각 제공하고 있는 저작물들은 2020년에 개봉된

최신 영화이거나 2021년 1, 2분기에 방영된 최신 드라마로서, 순번 25번 및 순번 28번을 제외하고는 현재 국내에 정식 수입되지 않은 상태임.

(순번 21번, 28번 심의대상게시물에 순차적으로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일본 방송물과 영화를 영상 없이 자막파일만 각각 제공하고 있음.

(순번 28번 게시물 본문과 게시된 자막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전환하며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 블로그에 게시된 타 게시물의 내용, 자막파일의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보아, 게시된 자막파일들은 게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전송 중인 것으로 추측됨.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자막파일은 '○○ ○○'을 특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측됨. 파일명을 검토한 결과, 순번 21번~24번까지 일본 방송 파일의 경우 일본 드라마 불법복제물 공유 목적으로 개설된 ○○○ 카페 "○○ ○○○○○"의 유명 업로더가 제공하는 파일과 동일함. 또한 순번 25번~28번까지 일본 영화 파일은 토렌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파일로, 순번 25번 및 28번의 경우 합법 시장에서 판매하는 파일명과 다른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게시자는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전제로 자막을 제작 중인 사실이 인정됨.

심의대상 게시물의 저작물 이용을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심의위원회의 합치된 기준에 따라 판단했을 때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자막에 대한 기존의 부결 사안과는 상이한 부분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D 위원: 해당 블로그 게시판 목록을 보여주시기 바람.

- 강나래 전문위원: 앞서 심의한 순번 13번~20번과 동일한 블로그이며, 게시자도 동일함. 해당 게시판명은 '○○○○○○○○○'이며, 2010. 3. 3.부터 2021. 6. 13.까지 총 95개의 자막파일이 게시되어 있음.

- C 위원: 해당 블로그에 광고가 게시되어 있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게시되어 있지 않음. 해당 블로그를 검토한 결과, 광고 게시를 비롯하여 기타 영리 목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없었음. 게시자는 취미 공유와 일본어 학습의 목적으로 자막파일을 제작하는 것으로 보임.

- D 위원: 과거 심의위원회에서는 영리 목적이 없는 마니아층의 취미 공유로서의 자막 전송이 인정되는 경우 및 국내 정식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자막을 영리 목적 없이 제작하여 공유하는 경우 부결한바 있음. 해당 사안 역시 영리 목적이 없는 취미 공유라는 점에서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종래의 부결 사안과 다르게 판단을 내리는 근거는 무엇인지?

- 강나래 전문위원: 종래의 부결 사안의 경우, 심의대상 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자막의 수가 매우 적었으며, 앞서 심의한 순번 13번~20번과 같이 불법 복제된 영상과 자막파일이 함께 이용되는 경우는 없었음.

그러나 본 안건의 경우, 해당 블로그 내 자막파일 전송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법복제물과 함께 이용할 것을 목적으로 자막을 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함. 더불어 타 게시판에서 불법복제물과 자막을 싱크하여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해당 자막파일 역시 언제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음. 해당 블로그는 현재 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며,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판단임.

- B 위원: 우리 심의위원회는 영상 없이 자막파일만 제공한 사안에 대해서, 해당 사이트에 자막파일이 대규모로 게시되고, 영리 목적의 광고가 게시되어 있는 경우 가결한바 있으며, 영리 목적이 없이 마니아층의 취미 공유로서의 자막파일을 전송할 경우 부결한 바 있음. 본 안건의 경우, 해당 블로그에는 영리 목적의 광고는 게시되어 있지 않지만, 앞서 심의한 순번 13번~20번과 같이 영상과 자막파일이 함께 이용됨과 동시에, 자막파일 전송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 심의위원회의 합치된 기준에 따라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A, C, D 위원: 이견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1번~28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9

번은 저작권자인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로 신고한 건임. 민원인이 카페에 작성한 글을 커뮤니티 사이트 '뽐뿌'의 이용자가 무단으로 게시한 사안임. 총 게시물 수는 1건임. 민원인이 신고한 민원 내용과 제출자료는 검토보고서에 정리해 두었음.

(민원인이 작성한 게시물에 접속하여 보여주면서)민원인은 카페 '○○○○ ○○○○'에 2021. 7. 22. 11시 30분경 "○○ ○○○ ○○○ ○○ ○○ ○○ ○○ ○○○○○"라는 제목으로 개인의 경험을 글로 작성하여 게시하였음. 민원인은 게시글 하단에 "○ ○○○○ ○○ ○○○ ○○○○○. ○○ ○○ ○ ○○○ ○○○○ ○ ○○○○"라고 안내하고 있음.

민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심의대상 게시물은 민원인의 이용허락 없이 해당 글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전송하고 있으므로 불법 복제 및 전송의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순번 29번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가 2021. 7. 22. 16시 30분 경 게시판에 "○○○ ○○○○ ○○○ ○○ ○○○ ○○○"라는 제목으로 민원인이 작성한 글의 일부(전체 분량의 5분의 4)를 무단으로 게시하였음. (순번 29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그러나 2021. 8. 4. 심의일 기준 "○○○○ ○○ ○○ ○○ ○○○○ ○○○ ○○○○."이라는 안내문이 확인되고 기존의 글에는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로 인하여 게시물이 전송 중단된 것으로 보임. 민원인의 글이 어문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민원인은 게시물의 외부 이동 및 복제를 엄금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점, 저작자인 민원인이 보호원의 시정권고 조치를 적극적으로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으나, 현재 심의대상 게시물이 블라인드 처리되어 저작권 침해 상태

가 해소되었으므로 부결 의견으로 수정 보고드림.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게시물이 블라인드 처리되기 전에 작성된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첨언하고자 함. 해당 사안의 경우 민원인이 작성한 카페 게시글이 어문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검토 의견에는 동의함. 그러나 시정권고의 대상성에 대하여서는 재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 부분에서 불법복제물 유통에 따른 권리자의 급속한 피해 확산 방지라는 시정권고 제도의 입법 취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부결하게 되었으므로 현 상황에서는 논의의 실익이 없는바, 추후 동일한 사안이 문제되었을 때 더 논의해 볼 수 있겠음.

- A 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 심의대상 게시물이 블라인드 처리되어 저작권 침해 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부결 의견임.

- D, C 위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9번은 시정권고 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30번~1702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

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3,509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게임,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음악 'How You Like That'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84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악 'How You Like That'을 1,90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해당 음악저작물은 2020. 6. 26.에 발매한 댄스 음악으로, 멜론, 네이버 바이브(VIBE) 등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멤버십 유료 가입 후 무제한으로 듣기 가능함. 심의대상 게시물은 위 음악저작물을 비롯하여 다수의 음악저작물을 '[멜.론] 2000-2020 연간 TOP 100'이라는 제목의 압축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SW 'Microsoft Office 2019'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34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SW 'Microsoft Office 2019'를 340 캐시에 판매 중인 사안임. 자동인증 완료 표시가 있는 프로그램 스크린샷을 함께 게시하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프로그램을 제공 중일 가능성이 매우 큼. 해당 저작물은 권리자 홈페이지에서 30일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며, 라이선스 이용료는 1년에 89,000원임.

(영화 '킹덤: 아신전'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479번은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킹덤: 아신전'의 전체 분량을 무료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해당 저작물은 2021. 7. 23.에 공개된 국내 영화로, 넷플릭스에서 유료회원 가입 후 시청 가능함.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순번

30번~1702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0번~1702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93769호(순번 29번)는 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1-93741호~93768호(순번 1번~28번), 안건번호 제2021-93770호~95442호(순번 30번~1702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o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20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20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8. 11.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

위원 박성호